

의안번호	2220039
의 퇴 인	이주희의원
회 답 일	2026. 9. 11.
추 계 번호	26B36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건물관리주체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 제한금지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억 3,200만원(연평균 6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물관리주체의 전기통신서비스선택권 제한금지의무 점검 (안 제51조 등)	551	584	616	632	650	3,032	606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점검의 대상 및 방식, 점검 실시횟수 및 비용, 시스템 구축 및 신고센터 운영 방식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건물관리주체는 같은 호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51조(사실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가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항 신설)	재량규정
3	안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5항 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0조(금지행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51조(사실조사 등)		
3	안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¹⁾ 및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지역 오피스 임대료의 연평균 증가율²⁾을 적용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신고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에 구축을 완료하고, 무상 유지보수기간(1년)을 거쳐 2028년 하반기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신고센터 운영 및 현장점검은 개정안 시행일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7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6. 7.)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3	3.3	3.3	3.3	3.3	3.3

2)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균 오피스 임대료는 2023년 4분기(월 23,000원/㎡), 2024년 4분기(월 23,900원/㎡) 2025년 4분기(월 24,900원/㎡)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05%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집합건물 등의 건물관리주체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³⁾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전기통신서비스선택권 제한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건물관리주체의 전기통신서비스선택권 제한금지의무 위반여부 점검’에 소요되는 경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선택권 제한금지의무 점검 계획(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국 집합건물 내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 제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이용자(집합건물 점유자 등)의 신고 접수·처리와 현장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 등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신고센터 운영,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 및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지역 오피스 임대료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 신고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에 구축을 완료하고, 무상 유지보수기간(1년)을 거쳐 2028년 하반기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신고센터 운영 및 현장점검은 개정안 시행일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7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3)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표 2] 전기통신서비스선택권 제한금지의무 점검 등에 따른 재정소요(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역할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신고시스템 구축	•신고 민원 처리 절차의 체계화 및 제도개선 데이터 확보	시스템 구축	200	—	—	—	—
		유지보수	—	15	30	30	30
		소 계(A)	200	15	30	30	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구축 비용 참고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에 따라 15% 적용. 다만, 무상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8년 하반기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신고센터 운영	•신고 민원 접수·상담 및 현장 실태 점검 등을 위한 사무 공간 마련, 인력 운영 등	상담인력 운영	165	341	352	363	375
		센터 임차료	19	39	41	42	44
		센터 보증금	40	—	—	—	—
		기자재	35	—	—	—	—
		기타경비	13	27	27	28	29
		소계(B)	272	407	420	434	448
		•상담인력: 3.8백만원('26년 기준)*×12월×7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상담원 월 도급 비용 참고 하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센터 임차료·보증금·기자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의 사례 참고. 다만, 임차료는 연평균 증가율 적용 •기타경비(사무용품비, 통신비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사례 참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2027년 상담인력 운영, 임차료, 기타경비의 경우 신고센터가 2027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7년은 하반기분(6개월분)만 반영					
현장점검 실시	•집합건물 등 현장점검 실시연간 현장점검 96회 *수도권 48회, 수도권 외 48회 기준	현장점검 운영인력	56	114	117	119	121
		현장점검 운영비	23	48	48	49	50
		소계(C)	79	162	165	169	172
		•현장점검 운영인력(2명): 55백만원*('26년 기준)×2명 *행정안전부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고(연구원급, 약 80% 용역 참여율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현장점검 운영비(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 · 사업 운영 회의비 0.3백만원 x 12회 = 3.6백만원 · 여비(근무자내) 0.01백만원 x 2인 x 48회 = 0.96백만원 · 국내여비 0.3백만원 x 2인 x 48회 = 28.8백만원 · 유튜브비 0.05백만원 x 48회 = 2.4백만원 · 현장점검 차량 렌트비 0.11백만원 x 48회 = 4.8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3백만원 x 2회 = 6백만원 •현장 점검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7년은 하반기분(6개월분)만 반영					
합 계(A+B+C)		551	584	616	632	650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명목임금상승률 및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지역 오피스 임대료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수치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건물관리주체의 전기통신서비스선택권 제한금지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0억 3,200만원(연평균 6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전기통신서비스선택권 제한금지의무 점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신고시스템 구축	200	15	30	30	30	—	—
신고센터 운영	272	407	420	434	448	—	—
현장 점검 실시	79	162	165	169	172	—	—
합 계	551	584	616	632	650	3,032	606

주: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점검의 대상 및 방식, 점검 실시횟수 및 비용, 시스템 구축 및 신고센터 운영 방식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 조정 등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점검의 대상 및 방식, 점검 실시횟수 및 비용, 시스템 구축 및 신고센터 운영 방식 및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